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54
----------	--------

제출일자 : 1999. 10. 2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삭제하는등 관련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 “수입증지판매계약제”로 완화
(안 제7조 및 제8조)
 - “판매인 지정시 직장금고 타우선”조항 삭제
-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조항 삭제 (안 제9조)
 -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계등 첨부 서류 제출 조항 삭제
- “수입증지판매인 변경 및 해지”시 “10일전”까지 신청하던 조항을 “2일전”으로 완화 (안 제11조)
- “수입증지판매소 위치” “판매인 승계” “변상책임”조항 삭제
(안 제12조,제14조,제17조)
- “수입증지판매수입금 관리”조항 삭제(안 제21조)

□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 계획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99.1.29 법률 제5695호)
- 경상남도수입증지 조례 개정(‘99.8.4 도조례 제2675호)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수입증지판매에관한계약등) 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 할 수 없다.
-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직원공제회,직원상조회등 직원 후생 복지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직원복지회” 라 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 판매인이 될 수 있다.

제8조 본문 중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한다.

제10조제1항중 “군수가 지정하는”를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이 주소, 판매소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2일전까지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대금을”를 “대금납부영수증”으로 하고, “수령하고자 할 때

에는”를 “수령 및 확인하고”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내지 제19조”를 “제12조 내지 제13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 내지 제25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25조 제1항 단서조항 중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를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판매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제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판매인 지정)</p> <p>① <u>증지는 군수.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 할 수 없다.</u></p> <p>② <u>군수.읍면장이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④ <u>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⑤ <u>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7조(수입증지판매에 관한계약등)</p> <p>① <u>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 할 수 없다.</u></p> <p>② <u>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③ <u>직원공제회, 직원상조회 등 직원 후생 복지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직원복지회” 라한다)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 판매인이 될 수 있다.</u></p> <p>④ <u><삭 제></u></p> <p>⑤ <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 ----- 판매인이 될 수 없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 (판매인의 지정신청)</p> <p>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군수.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직장금고에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 등 직원 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읍,면명을 군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0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u> ② (생략)</p>	<p>제9조 (판매인의 의무) ① ----- ----- <u>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① <u>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 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u>판매인이 주소, 판매소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증지의 판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2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p> <p>③ <u>군수는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u></p>
<p>제12조(판매소의 위치) <u>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u></p>	<p>제12조 <삭제></p>
<p>제13조 (지정의 취소) ① <u>군수.읍면장이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② <u>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도 이와 같다.</u></p>	<p>제13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③ 읍면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 (판매인의 승계) <u>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1. <u>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u> 2. <u>판매인이 사망한 때</u> 3. <u>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u> 4. <u>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u></p> <p>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 ~ ② (생략) ③ <u>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17조 (변상책임) ① <u>판매인으로 지정된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증지 취급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실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u></p>	<p>제14조 <삭 제></p> <p>제15조 <삭 제></p> <p>제11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대금납부영수증을</u> -----<u>수령 및 확인하고</u> ----- -----.</p> <p>제17조 <삭 제></p>

현행	개정안
<p>그 손실발생이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8조~제19조 (생략)</p>	<p>제12조~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21조 (판매수입금 관리) ① 직장 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 규칙(이하“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1조 <삭 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상조금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p>	
<p>제22조~제24조 (생략)</p>	<p>제14조~제16조 (현행과 같음)</p>
<p>제25조 (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있다.</p>	<p>제17조 (증지의 환매) ① ----- -----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판매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 (생략)</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제28조~제30조 (생략)</p>	<p>제19조~제21조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 서식(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p>	<p>별지 제1호 서식(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p>
<p>별지 제2호 서식(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p>	<p>별지 제2호 서식 <삭 제></p>
<p>별지 제8호 서식(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 신청서)</p>	<p>별지 제8호 서식(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변경, 해지)신청서)</p>
<p>별지 제9호 서식(수입증지 판매 신고서)</p>	<p>별지 제9호 서식 <삭 제></p>

【 별지 제1호 서식 】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판 매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판매 장소			
〈판매소 약도〉 - 뒷면 작성			
위 본인은 거창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수수료 없음

(전면)

수입증지 판매소 약도

4

(후면)

【 별지 제8호 서식 】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변경, 해지]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약 변경 사유 :

변 경 내 역

주소, 판매소

당 초

변 경

※ 판매소 약도 - 뒷면 작성

계약 해지 사유 :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변경, 해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수수료 없음